

##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기업의 대응

### - 디지털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디지털화의 전개에 따라서 기존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상거래, 유명 상표 보호, 인터넷 주소명 보호와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분야가 발생함
- WTO, WIPO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지식재산권 보호 논의가 활발함

### - 국내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 선진국들에 비해 지식재산 심사 처리 기간이 길고, 전반적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90년대에 들어 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수익성 증대라는 기회 요인이 있는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 증대, 기술적 종속 가능성 등의 위협 요인을 발생시킴

### - 지식재산권 강화 시대 기업의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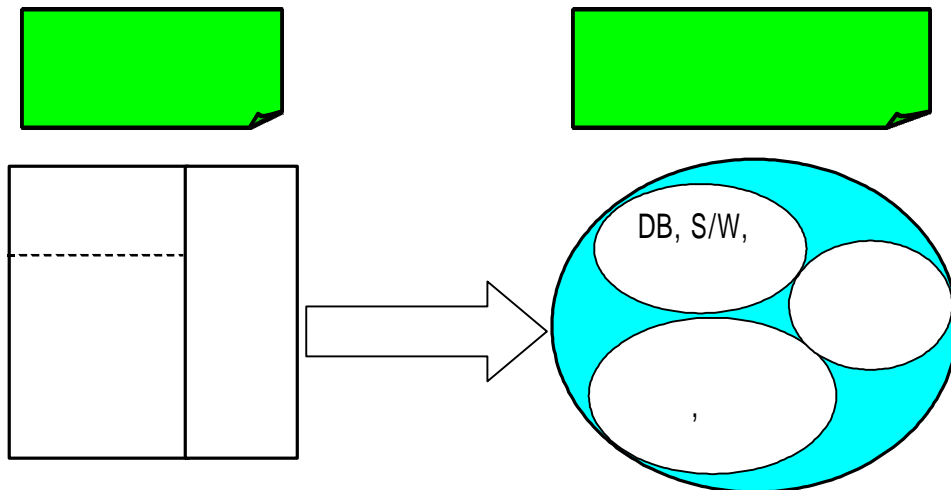
- (R&D 투자 증대로 기업 내 지식재산권 축적) 지식재산권 활용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종속을 회피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축적해야 함
-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발굴 및 전략적 활용) 국내외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발굴해서 사업화를 추진해야 함
-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를 통한 경쟁 우위 추구)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 우위를 추구해야 함
- (저비용의 신속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는 지식 유통 사업 구상) 저비용의 신속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을 가상공간에서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신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기업 내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 비용을 절감해야 함
- (고유 문화 자산의 지식재산권화 추진) 국내 고유의 문화, 역사 등 선진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식자산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한편,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선진국에게 선점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기업의 대응

### □ 디지털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대량의 정보와 지식이 신속하게 유통되는 것을 가능케 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디지털화)에 따라서 기존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신지식재산권 분야가 발생함
  - 기존의 지식재산권<sup>1)</sup>은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과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됨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배치 설계, 인터넷 주소 이름, 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등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개념으로 보호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국제적으로도 보호 기준 등이 제정되어 있지 못함
  - 신지식재산권은 이렇듯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등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함

### < 정보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확대 >



1)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특허청과 문화관광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음. 특허청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지적재산권'이란 표현이 'Intellectual Property'의 일본식 번역어라는 지적이 있어, 1998년부터 특허청이 관리하 '산업재산권'을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 맞게 '지적재산권'이란 표현 대신 '지식재산권'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WTO, WIPO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EU 등 국가별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기구) WTO는 밀레니엄라운드에서 전자상거래, 동식물 등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도 유명상표 보호, 인터넷 주소 이름 보호와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 체제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 1998년 10월 소프트웨어, 음악, 출판 등 디지털 시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통과시켜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대비하고 있음
  - (EU) 1999년 2월 유럽의회와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특허 강화를 통한 혁신 촉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터넷상의 저작물, 음악 등의 불법 복제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을 제정하기로 함

□ 국내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 (국내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 보호 현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우선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심사 처리하는 기간이 선진국의 22개월 보다 1.6배나 긴 36개월로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권 창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함
  - 이에 따라 IMD에서 작성한 지식재산 보호지수는 4.661로 미국이나 일본의 8.291과 7.400보다 크게 낮음

< 국내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 >

	심사처리기간(개월)	지식재산 보호 지수(IMD)
미국	22.2	8.291
일본	22.0	7.400
한국	36.0	4.661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 1999. 5.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997 PTO Annual Report*, 1998.

- (강화 추세)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침해율 및 손실액 추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1994년에 침해율과 손실액이 각각 75%와 5억 1,000만 달러였으나, 1998년에는 64%와 1억 9,700만 달러로 낮아짐

<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침해율 및 손실액 >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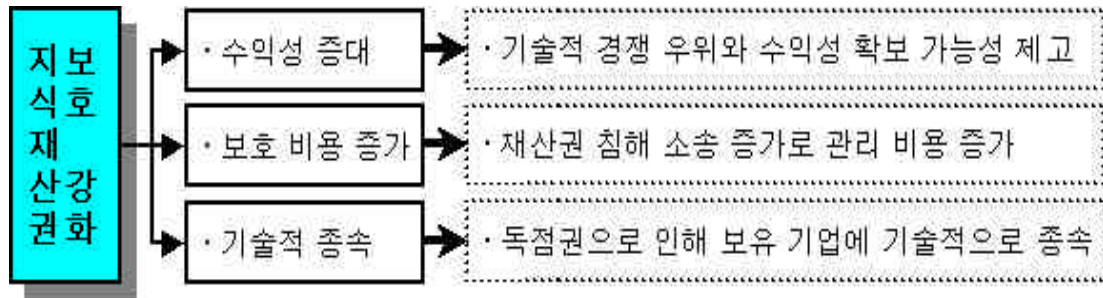
	1994		1995		1996		1997		1998	
	침해율	손실액	침해율	손실액	침해율	손실액	침해율	손실액	침해율	손실액
미국	31	3,589.5	26	2,940.3	27	2,360.9	27	2,779.7	25	2,875.2
일본	66	1,399.8	55	1,648.5	41	1,190.3	32	752.6	31	596.9
대만	72	112.0	70	165.5	66	117.0	63	136.9	59	141.3
한국	75	510.6	76	675.3	70	515.5	67	582.3	64	197.5
세계	49	12,346.5	46	13,332.6	43	11,306.3	40	11,440.1	38	10,976.5

자료: 1998 Global Software Piracy Report, Business Software Alliance, 1999.5.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 추이)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의 단속을 중심으로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통상 마찰 회피, 지식소유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를 두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활동을 펴고 있음
- (신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구상)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규범에 맞추어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 맞는 지식재산권 법제 정비를 위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 중임
  - 또한 지리적 표시, 인공지능, 프랜차이징, 캐릭터, 소리·냄새상표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영향

< 신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 (기회 요인)

- (지식재산권의 수익성 증대)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기술적 경쟁 우위 확보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짐

- (위협 요인)

-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 증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한편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sup>2)</sup>, 기업에게는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사업 전개에 애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술적 종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은 한편으로 세계 표준을 보유한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고, 기술의 과급 및 연관 효과가 커서 타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옴

□ 지식재산권 강화 시대 기업의 대응 과제

- (R&D 투자 증대로 기업 내에 지식재산권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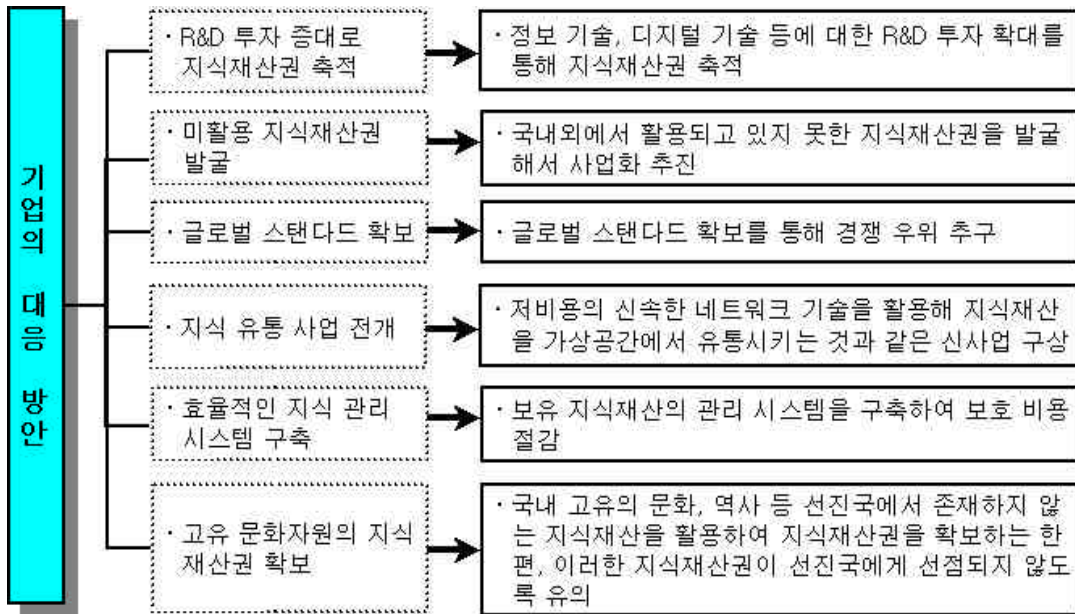
-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주체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아니라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기술, 정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MS, IBM 등 초국적 기업들임
- 디지털화는 아직도 진행중이며,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선진업체를 중심

2)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의 수가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증가해 나옴. 즉 1992~95년 기간에 일반 소송 증가율은 15%, 12%, 1%, 1% 였으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증가율은 33%, 12%, 9%, 6% 에 달함(자료: 일본 통계청, 「Toward the era of Intellectual Creation」, 1

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통신, 인터넷,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지식재산권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업의 대응 방안 >



-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발굴 및 전략적 활용)

-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화는 기업 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 연구기관 등 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발굴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음
- 일본 특허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내 총 특허의 33% 정도만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절한 이용자를 찾지 못해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함<sup>3)</sup>

-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를 통한 경쟁 우위 추구)

- ‘개량 중심’의 기술 개발과 보호를 기본으로 한 일본은 미국에 비해 4배 이상의 특허 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조 원의 기술무역 적자를 기록하였음<sup>4)</sup>
- 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성은 응용 기술보다 기초 기술에 있으며, 기초 기술 분

3) 일본 통계청, 「Toward the era of Intellectual Creation」, 1997.

4) 최덕린, “특허권과 국가경쟁력”, 전자신문, 1999. 5. 24

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면 장기적 고수익 기반을 갖게 됨

- 최근 현대전자의 멀티미디어 동영상 압축 기술 MPEG4가 국제표준안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돼 국제 표준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저비용의 신속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지식 유통 사업 구상)

- 디지털화에 따른 복제 용이성 및 불법유통에 따른 지식재산 침해 기술은 한편으로 지식재산의 탐색 및 유통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지식 재산을 포함한 국내외 지식센터를 네트워크화하여 지식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지식 창출 비용을 절감하거나 지식 재산의 활용을 증대, 유통시키는 전략사업화가 필요함
- 일본의 NKK, 日立製作所, 富士銀行 등 芙蓉그룹은 그룹 각사 및 거래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권을 DB화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업 내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관리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함
- 또한 소송 발생시에도 기술의 상호 라이선스,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기업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함

- (고유 문화 자산의 지식재산권화 추진)

- 지금까지를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화의 기반 조성 시기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세계의 내용을 채워가는 디지털 창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음
- 아직까지 디지털화하지 못한 문화, 기술, 역사 등의 지식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세계에서 수익원인 신지식재산권을 축적해 나가야 함
-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 태권도, 남대문, 동대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미 외국인에 의해 선점당했다는 것은 기술 종속에 이어 지식재산권마저 종속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sup>5)</sup>

■ 신광철 주임연구원 [kcshin@hri.co.kr](mailto:kcshin@hri.co.kr) ☎724-4047

---

5) kimchi.com, taekwondo.com, namdaemun.com 등 우리문화에 관한 인터넷 도메인 명은 이미 외국인에 의해 선점당하고 있음